

데이터3법. 핵심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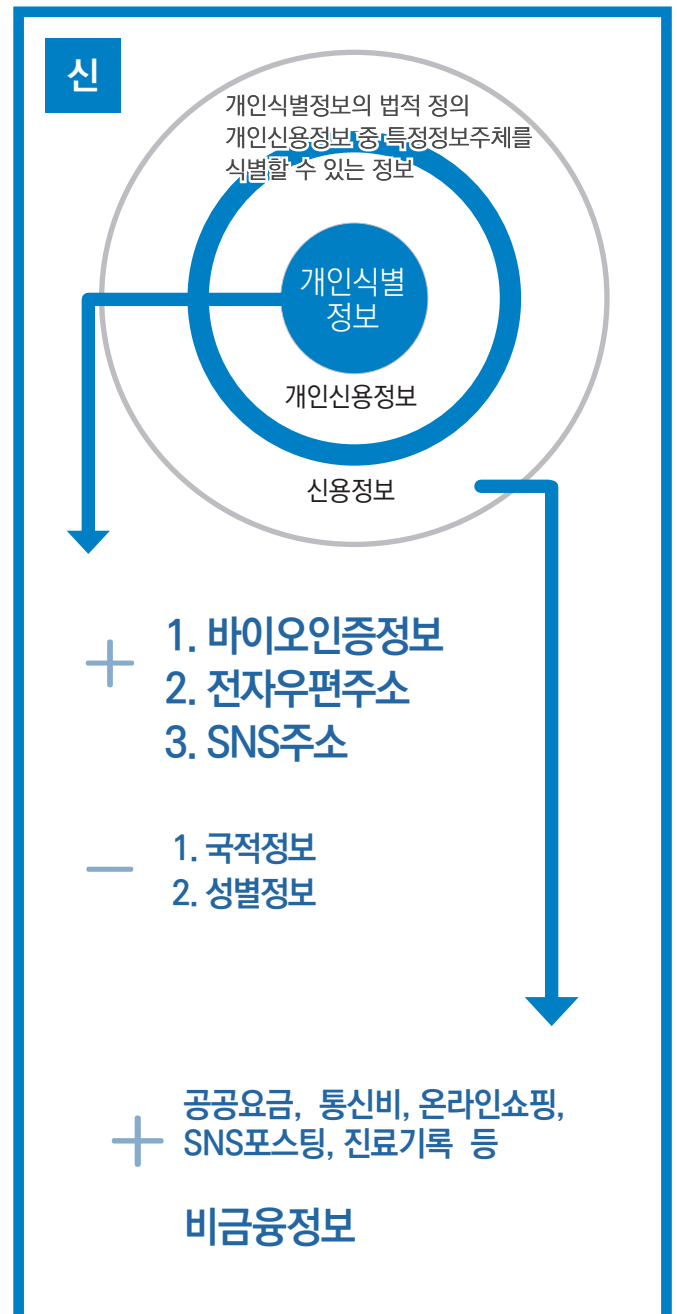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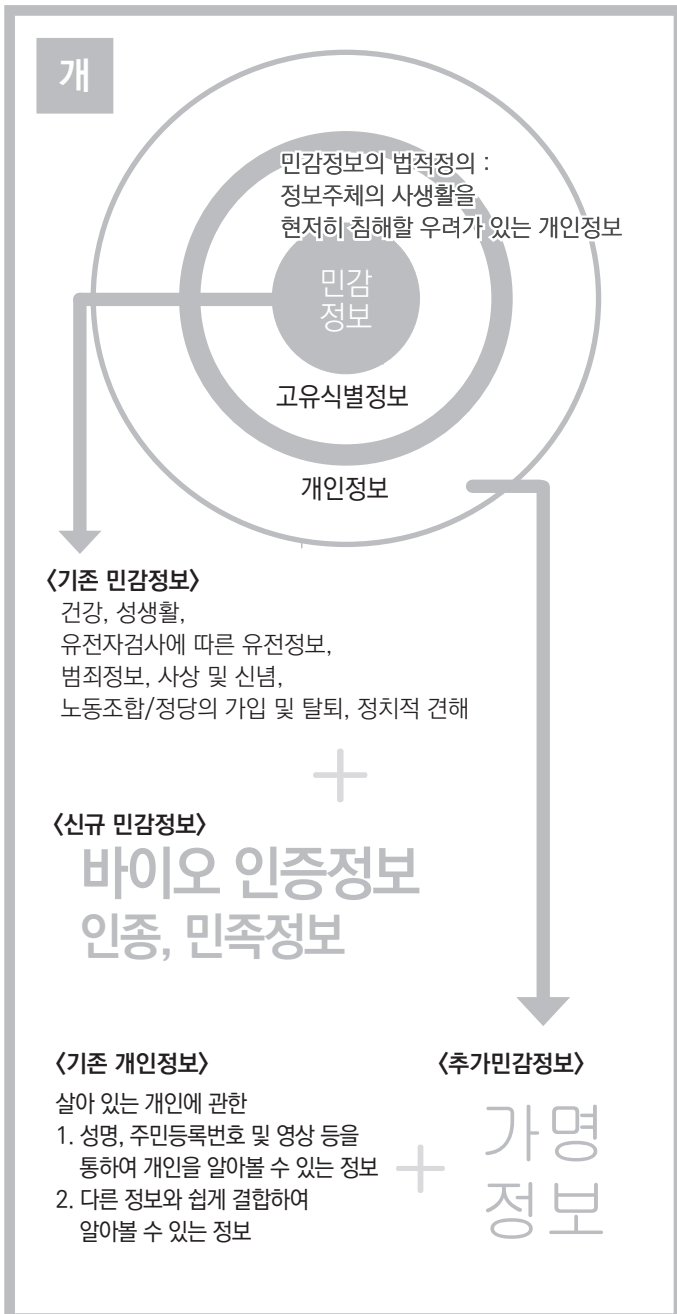


관련법 **신** 자금융거래법 **온** 라인투자연계금융법

신 용정보법

① 신용정보에 바이오인증, 비금융정보 포함

2020년 8월 5일 시행



신용정보

신용정보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

- 가.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나.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다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(비금융정보까지 확대)
- 라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개인신용정보

신용정보 중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(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)
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)

개인식별정보

개인신용정보 중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1.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**전자우편주소, SNS주소**
(기존 국적, 성별삭제)
2. 개인식별번호
: 주민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
3. **신체인증정보**
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
변환한 문자, 번호,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
식별할 수 있는 정보
4. **방법상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개인식별정보**
5. 특정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
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

1 신용도 판단정보에 비금융정보 포함
 변화 공공요금, 통신비, 온라인쇼핑, SNS포스팅 등
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도를 판단하는 비금융 CB 신설

2 개인식별정보 범위 변화
 변화 <추가> 전자우편주소, SNS주소, 신체인증정보, 방법상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개인식별정보
 <삭제> 국적, 성별

이전 리포트보기 (2017.01 발송, 신용정보법상 정보개념)